
[논평]김황식 대법관 퇴임사에 부쳐 - 김황식 대법관에게 법치주의는 있는가?

1 개의 메일

2008년 7월 28일 오후 6:45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전화 : 02-2235-0062 / 팩스 : 02-2236-0062 / 홈페이지: <http://lawyer3000.or.kr>

날 짜 : 2008년 7월 28일(월)
수 신 : 언론사(법원, 국회, 사회부 출입기자)
발 신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제 목 : [논평]김황식에게 법치주의는 있는가.
문 의 : 오영경 실행위원

논평 바로보기(클릭)

[논평]김황식에게 법치주의는 있는가.

김황식 대법관은 7월 29일 대법관 퇴임사를 하면서 “법원과 감사원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일한다는 큰 틀은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행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법관이 재판시 준거로 삼아야 할 헌법과 법률이나 양심 등의 기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흔들려 놓으려는 세력에 법관들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김 전 대법관이 ‘할’ 말이 아니라 ‘들을’ 말이다. 감사원장 인사청문을 앞두고 형식적 구색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퇴임식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전혀 인식치 않고 있다.

퇴임사를 따라 되물어보자.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직이 있는가? 계속 법관으로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면 안 되는가? 감사원장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가?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6년 임기는 법 규정이 아닌가? 사법부 최고위직이 대통령 직속기관장으로 가는 것은 독립을 침해받은 것이 아닌가?

결국 ‘법관은 재판에서만 법을 준거로 삼으면 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법과는 별개다, 청와대로부터 내정받은 이직은 법관의 ‘독립’과 무관하고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숙고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특권 엘리트 의식이다.

오늘 퇴임사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김 내정자의 자의적이고 황당한 이중 잣대가 분명히 확인됐다. 또한 자리에 연연할 뿐,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상식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고 본다.

사법부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자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자임하는 것은 위선이고 국민 기만이다. 국회는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2008년 7월 29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손영태, 이창수>